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시행령 개정사항을
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
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와
여성기업 주간¹⁾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
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
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여
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- 저출산·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
양질의 여성노동력 활용을 통한
서울의 성장잠재력 강화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,

1) 7월 첫째주

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

여성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²⁾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) 서울시 여성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중은 62.9%로, 남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중(38.8%)보다 24.1%p 높게 나타남.

* 출처: 서울연구원(2021), 「통계분석과 실태조사로 본 서울시 여성기업의 특성과 육성방향」